

| 구분 | 징수기준 | 금액(원) | 비고 |
|----|-------------|--|-------|
| 단 | 일 반 | 19세이상 64세이하 | 4,000 |
| | 청 소 년 · 군 경 | 청소년: 14세이상 18세이하 군 경: 하사관이하 군인 및 의경, 전투경찰 | 3,100 |
| 체 | 노 인 | 65세이상 | 2,000 |
| | 어 린 이 | 4세이상 13세이하 | 1,800 |

제주도민은 개인요금의 50% 할인(증명 확인 후)

※ 단체: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 관광진흥부가금은 공급가액의 2%임

2. 이용료

| 구분 | 징수기준 | 금액(원) |
|------|---------|------------------|
| 유람동차 | 어른, 청소년 | 14세이상 1,000 |
| | 어린이 | 4세 이상 13세 이하 500 |

30.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支援에關한 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支援에關한 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4. 9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1998년 4월 3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1998.4.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2. 제안설명요지(보건사회국장 朴漢慶)

지금까지 예산반영에 의하여 시행해 온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보호대상자(안 제2조)

-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
- (2)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나. 보호내용(안 제3조)

- (1) 결식아동 급식비, 교육관련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지원
- (2) 기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보호대상자의 결정(안 제4조)

- (1) 생활보호법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로 결정
- (2) 긴급구호비의 경우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
- (3)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

4.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尹炳國)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저

소득 국민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부조프로그램은 생활보호사업을 들 수 있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서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어 그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은 생활보호사업의 특성은 중앙 집권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 대상시민의 특수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지역별,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화시대의 진전에 따른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확대 현상을 감안할 때 계속 증폭될 소지가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타 시도와 비교 더욱 그러함.

-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보호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사업 범위 외의 몇 가지 사업을 80년대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즉,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명절보상품 및 월동비지원(80년), 결식아동급식비지원(89년), 긴급구호비지원(89년), 교육관련경비지원(97년) 사업이 그것들임.(팔호안은 처음 시행년도)

- 그러나 이러한 보호사업은 “생활보호법” 내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근거한 사업이 기보다는 시 자체 방침에 의한 독자적인 사업들로서 그 시행 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한다기 보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내용검토에 앞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기부, 보조 또는 공급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생활보호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생활근공자의 보호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금품의 보조도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효과가 조례에 의해 전혀 지장이 없는 때나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이러한 유형의 조례제정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사업에 대해 그 법률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안)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저소득주민에 대해 보호사업의 주요핵심 내용은 보호대상의 범위설정과 보호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바, 본 조례(안) 제2조에 보호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있고, 또 조례(안) 제3조의 보호내용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5가지 외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대상자와 보호내용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호사업이 특정한 개인에게 예산으로 금품을 직접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객관성 및 형평성

| | |
|---|--|
| <p>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보호대상과 보호내용의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안) 제2조(보호대상)와 제3조(보호내용) 중 기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아울러 보호내용의 지급시기, 긴급구호비가 지급되는 저소득 시민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도 조례로 정하여 임의적 집행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p> <p>○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는 법령의 근거가 미약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호사업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를 확보코자 제정되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 제정전에 시행된 보호사업에 대한 추진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6. 질의답변요지 : 생략</p> <p>7. 심사결과 원안의결(재적 15인, 재석 9인, 찬성 9인)</p> <p>8. 소수의견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 生活安定支援에關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特別市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關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호대상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p> | <p>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p> <p>2.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p> <p>제3조(보호 내용)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명절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p> <p>②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p> <p>③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p> <p>④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p> <p>⑤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31.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水資源管理委員會 朴正龜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朴正龜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朴正龜議</p> |
|---|--|